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010
----------	------

2022. 3. 25.(금)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이숙애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2년 3월 7일

다. 회부일자 : 2022년 3월 10일

라. 상정일자 : 2022년 3월 16일

- 제3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숙애 의원)

가. 제안사유

- 복지현장에서 직·간접적으로 위험을 경험한 사회복지사 등은 소진(burn out) 등 위기 및 외상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이는 서비스의 질 저하로 연계되는 바,

- 이에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서비스 질을 개선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용어 정의에 “사회복지기관” 및 “안전 및 인권보호” 를 규정함. (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에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지원 사업에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과 안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고, 위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 (이덕항 수석전문위원)

가. 제출배경

- 복지수요가 증가되며 점차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강조되면서 사회 복지사 등이 일선 현장에서 언어적·물리적 폭력과 인권침해에 무방비로 노출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사협회(2018)의 사회복지 종사자 등에 대한 이용자의 폭력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체적 위협, 언어적 위협, 정서적 위협, 성적 위협 등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최근 1년간 이용자로부터의 폭력 경험>

(단위 : 명, %)

구 분		경험있음		경험없음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신 체 적 위 험	1) 경미한 신체적 폭력(밀치기, 멍살잡기, 붙잡기 등)	628	(20.7)	2,413	(79.3)
	2) 중간수준의 신체적 폭력 (뺨 때리기, 침 뱉기, 깨물거나 핥기 등)	283	(9.4)	2,735	(90.6)
	3) 높은 수준의 신체적 폭력 (주먹이나 발로 차기, 목조르기, 물건 던지기 등)	233	(7.7)	2,775	(92.3)
	4) 치명적 수준의 신체적 폭력 (칼을 겨누거나 휘두름, 칼로 찌름 등)	31	(1.0)	2,967	(99.0)

구 분		경험있음		경험없음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언 어 적 위 험	1) 욕설을 비롯한 인격모욕적 발언	1,231	(40.5)	1,805	(59.5)
	2) 나와 가족, 동료 및 기관에 대한 헐박	463	(15.4)	2,551	(84.6)
	3) 지속적인 불평, 불만의 표현(공식적 민원제기 포함)	1,270	(41.9)	1,761	(58.1)
정 서 적 위 험	1) 뚜렷한 목적 없이 기다리거나 따라다니거나 잦은 연락	546	(18.1)	2,474	(81.9)
	2) 클라이언트 자해 및 자살시도를 통한 위협 경험 또는 실제 행동 목격	419	(13.9)	2,596	(86.1)
	3) 고위험군 클라이언트와의 상담 및 서비스 제공시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	967	(32.0)	2,054	(68.0)
	4) 클라이언트가 야기한 위험으로 인해 정신건강의학 진료 또는 약물을 복용	90	(3.0)	2,917	(97.0)
성 적 위 험	1)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통한 언어적 성희롱, 성추행	359	(11.9)	2,663	(88.1)
	2) 원하지 않은 신체 접촉(쓰다듬기, 더듬기, 껴안기)	425	(14.1)	2,596	(85.9)
	3) 클라이언트 자신의 신체 및 성기 노출	208	(6.9)	2,809	(93.1)
	4) 강간 또는 강간 시도	16	(0.5)	3,001	(99.5)

※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8 사회복지사 통계연감

- 또한 이와 관련해, 2020, 2021년에는 국가 및 지자체의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증진 책임 및 폭력피해 예방 근거 마련⁷⁾과 실질적 보호 대책 마련 수행 전문기관으로서 사회복지인 인권센터의 권역별 설치 운영 등의 내용⁸⁾을 포함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함.

○ 복지현장에서 직·간접적으로 위험 및 인권침해를 경험한 사회복지사 등은 소진(burn out) 등 위기 및 외상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이는 서비스의 질 저하로 연계되는 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발의됨.

7)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20.12.16.): 사회복지사 등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신설 / ' 21. 02. 17. 복지위 소위 회부(정부 수용 입장)

8) 김기현 의원 대표발의('21. 03. 3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등의 인권증진 책임 및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설치·운영 신설 / ' 21. 04. 26. 복지위 소위 회부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현행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로 구분하여 정의했던 것을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포괄하는 용어인 “사회복지기관”으로 포괄해 정의 하고, 이에 따라 적용대상을 재규정하였음.
- 이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음.
- 또한 안 제2조제4호에는 “안전 및 인권 보호”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 안 제4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 보호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7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에 근무환경 개선, 안전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가 규정하고, 본 사업의 추진 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이는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과 안전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포함되는바 법령상 문제가 없음.

- 또한 사회복지사 등이 기본적인 근무환경 및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면 이는 곧 이용자들에게 대한 질 낮은 서비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볼 때, 본 개정안은 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초석이라 할 수 있음.
- 다만, 본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 보호라는 포괄적 의미의 지원을 규정한 것으로, 이에 대한 세부 실천 사업(지원체계, 안전 지침 마련·배포, 교육·홍보 등)은 해당 위원회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야 할 것

다. 종합 검토의견

- 충청북도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음.
 - 그러나 인건비 영역의 점진적 개선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비해, 사회복지사 등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으로 인한 안전, 인권 문제에 대해 아직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은 직무만족도 저하, 이직의도 상승 및 근로의욕 훼손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전문가적 역할과 실천 행위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음. 즉,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은 사회복지사 등의 개인 인권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실천의 성과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임.
-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법적·내용적으로 타당하며, 조례안 예고 및 집행부 협의를 거쳐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시설 및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안전 및 인권 보호”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 수행 시 경험하는 신체적·언어적·정서적·성적 위험에 대한 예방 및 사후지원을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법인 및 시설 등”을 “사회복지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3조 제3항”을 “법 제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단체 등”을 “사회복지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기관 및 단체”를 “사회복지기관”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보수교육”을 “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5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6.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 제목 “(신변안전 및 신분 보호)”를 “(안전 및 신분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 및 시설”을 “사회복지기관”으로, “범위 내에서 이를”을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u>사회복지법인</u>”이란 「<u>사회복지사업법</u>」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u>사회복지시설</u>”이란 「<u>사회복지사업법</u>」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u>사회복지사 등</u>”이란 「<u>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u>」(이하 “<u>법</u>”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u>사회복지기관</u>”이란 「<u>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u>」(이하 “<u>법</u>”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시설 및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u>사회복지사 등</u>”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u>안전 및 인권 보호</u>”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 수행 시 경험하는 신체적·언어적·정서적·성적 위협에 대한 예방 및 사후 지원을 말한다.
<p>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u>다음 각 호의 법인 및 시설</u>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사회복지법인</u> 2. <u>사회복지시설</u> 	<p>제3조(적용대상) ----- -- <u>사회복지기관</u>----- ----- -----.</p> <p><삭 제></p> <p><삭 제></p>

<p>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u>각 목의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 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u></p> <p>4.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u>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u></p>	<p><삭 제></p> <p><삭 제></p>
<p>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② (생 략)</p> <p><신 설></p>	<p>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② (현행 과 같음)</p> <p>③ <u>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 전 및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 야 한다.</u></p>
<p>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u>법 제3 조 제3항</u>에 따라 3년마다 사회복지 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조사 하여야 한다.</p> <p>② (생 략)</p> <p>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 공기관 또는 <u>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단체</u>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u>기관 및 단체</u> 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제6조(실태조사) ① ----- <u>법 제3 조제4항</u>-----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사회복지기관</u>----- ----- ----- ----- <u>사회복지기관</u> ----- -----.</p>
<p>제7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사회복지 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제7조(지원 사업) ① ----- ----- ----- -----.</p>

<p>1. (생략)</p> <p>2.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u>보수교육 및 훈련 사업</u></p> <p>3. · 4.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5. (생략)</p> <p><u><신설></u></p>	<p>1. (현행과 같음)</p> <p>2. ----- <u>교육</u> -----</p> <p>3. · 4. (현행과 같음)</p> <p>5. <u>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u></p> <p>6. <u>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사업</u></p> <p>7. (현행 제5호와 같음)</p> <p>② <u>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p>
<p>제8조(신변안전 및 신분 보호) ① <u>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 및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의 위협 또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u></p> <p>② (생략)</p>	<p>제8조(안전 및 신분 보호) ① <u>사회복지기관</u>----- ----- ----- ----- ----- ----- -----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p> <p>②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11.>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한 종사자 대체 인력지원 및 교육·훈련 사업 등 추진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사회복지사 등 근무환경 및 여건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국비70%, 도비30%)
- 사회복지사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훈련비 지원(도비100%)

연 번	사 업 명	지 원 내 역	
		지 원 내 용	예 산
계			493,005천원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 체 인 력 지 원	경조사, 병가, 연가, 교육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 자의 업무공백 시 사회복지시설에 대체인력 파견	483,005천원
2	사 회 복 지 법 인 시 설 교 육 지 원	사회복지법인·시설 담당공무원 및 종사자 역량 강화, 안전·인권보호 교육·훈련 등 지원	10,000천원

나. 추계 결과 : 2022년부터 향후 5년간

다.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도비

3.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493,005	507,495	522,420	537,793	553,627	2,614,340	
국 비	338,104	348,247	358,694	369,455	380,539	1,795,039	
도 비	154,901	159,248	163,726	168,338	173,088	819,301	
세 출	493,005	507,495	522,420	537,793	553,627	2,614,34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483,005	497,495	512,420	527,793	543,627	2,564,340	
사회복지 법인·시설 교육지원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지원 비용	0	0	0	0	0	0	
재원 조달	493,005	507,495	522,420	537,793	553,627	2,614,340	
의존 재원	소 계	338,104	348,247	358,694	369,455	380,539	1,795,039
	보조금(국비)	338,104	348,247	358,694	369,455	380,539	1,795,039
	지방교부세	0	0	0	0	0	0
자체 수입	소 계	154,901	159,248	163,726	168,338	173,088	819,301
	지방세	154,901	159,248	163,726	168,338	173,088	819,301
	세외수입	0	0	0	0	0	0

※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인건비)은 연도별 임금인상율은 3%로 가정